

### Ⅰ. 지원 자격

### 1. 정원 내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학교장, 지도교사, 담임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

#### 2. 정원 외 [별첨 1] 참조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

# Ⅱ. 전형 유형 및 선발 인원

	구	분	모집 인원	모집 정원	
정원 내	글로벌	전국단위 선발	45명	 90명	
6면 네	융합인재전형	지역인재 선발	45명	900	
정원 외	사회통합전형	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해당자	모집정원의 10% 이내	9명 이내	

- ※ 지역인재선발 지원 자격(원서접수 마감일 기준)
  -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(담양고서중학교, 한재중학교, 장성남중학교, 남평중학교를 포함)에 최 근 1년 이상 재학중인 자
  - 법령에 의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광주광역 시에 최근 1년 이상 거주중인 자
- ※ 정원 내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복지원 불가(정원 내 전형에서도 중복지원 불가)

# Ⅲ. 입학 원서 접수

구 분	내 용
 인터넷 원서접수	기간 : 2020. 4. 2.(목) 09:00 ~ 4. 9.(목) 17:00
	접수 사이트 : http://www.uwayapply.com
자기계발계획서 및	기간 : 2020. 4. 2.(목) 09:00 ~ 4. 10.(금) 17:00
추천서 입력	접수 사이트 : http://www.uwayapply.com
우편 서류 제출	기간 : 2020. 4. 9.(목)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
※ 반드시 등기우편으로	접수처 : (우)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15
제출 <b>(방문접수 불가</b> )	광주과학고등학교 입학원서접수처

# Ⅳ.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

제출방법		제출서류	유 의 사 항	
우편 제출	공	입학원서	•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의 해당란에 본인의 서명(또는 날인)과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제출 •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진(3cm × 4cm) 입력	
		중학교 내신성적 입력 확인자료	•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지원자, 현재 학년 담임교 사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	
		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	•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	
		학교생활기록부Ⅱ	<ul> <li>출력 시 단면으로 인쇄하며 '원본대조필' 및 학교장의 직인과 간인을 받은 후 제출(단, 진본 확인 바코드가 있는 경우 간인 생략 가능)</li> <li>출결마감일 : 2020.3.25.(수) 특기사항에 마감일자 기록</li> <li>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출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표를 모두 제출</li> <li>지원자가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인 경우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표를 모두 제출</li> <li>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와 비교평가 성적증명서(없는 경우 성적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1부 제출</li> <li>외국유학 학생은 해당국가 전 학년 성적증명서를 추가 제출</li> </ul>	
	중1, 중2 재학생	상급학교 진학 허가서	•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또는 조기 진급· 졸업·진학 평가위원회 등에서 심의하여 추천을 받 은 학생으로 본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상급학교 진 학 허가서 제출	
	사회통합전형 대상자	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	•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②항 증빙서류 [별첨 2] 참조	
인터넷 접수		자기계발계획서	• 우편 제출 없음	
	I넷 십구 트에 입력	담임교사 추천서	• 추천서는 지원자 인터넷 원서 접수 후 입력	
1 1— 11 — 1		교과교사 추천서	• 교과교사 추천서는 수학교사 또는 과학교사가 작성	

#### ※ 유의 사항

- 1. 다음의 자료는 입학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지 않음
  - 교외 경시대회 입상 실적
  - 영재학급·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
  - 수학・과학 등 교과에 관련된 인증시험 또는 능력시험 점수
- 2. 사회통합전형 증빙서류 및 중학교 1, 2학년 재학생 상급학교 진학 허가서는 해당자만 제출
- 3. 우편 제출 서류는 모두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 이후 일절 반환하지 않음
- 4. 제출 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

# Ⅴ. 전형 방법 및 일정

구분	1단계 전형	2단계 전형	3단계 전형
방법	학생기록물 평가	영재 기초소양평가	영재성 다면평가
내용	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통 하여 영재성 및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	수학·과학 분야의 기초 소양 및 창의적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	글로벌 융합 과학인으로서 의 자질과 탐구역량 및 잠 재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접수 기간	2020. 4. 2.(목) ~ 4. 9.(목)	2020. 5. 8.(금) ~ 5. 11.(월)	2020. 6. 12.(금) ~ 6. 16.(화)
전형 일시	2020. 4. 10.(금) ~ 5. 8.(금)	2020. 5. 17.(일)	2020. 7. 4.(토) ~ 7. 5.(일) 1박2일
전형 대상	지원자 전체	2단계 등록자	3단계 등록자
선발 인원	영재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전원 선발	150명 내외	• 정원 내 : 90명 (45명을 지역인재 선발 대상자로 선발) • 정원 외: 9명 이내
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공고	2단계 대상자 2020. 5. 8.(금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	3단계 대상자 2020. 6. 12.(금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	3단계 합격자 2020. 7. 23.(목)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공고

- ※ 모든 전형 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※ 각 단계별 평가 시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격자를 사정한다.
- ※ 1, 2단계 전형에서 각각 우선합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, 우선합격자는 다음 단계 전형의 일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에는 불합격 처리된다.
- ※ 사회통합 전형은 정원 내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며, 단계별 대상자 및 합격자 선정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

## Ⅵ. 최종합격자 선정

- ※ 3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안내하여 점검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최 종합격자로 선정함
- ※ 3단계 합격발표 이후 출신학교 교육과정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본교 교육과정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최종합격 되지 않을 수 있음
- ※ 최종합격심의 대상자 중 결격사유에 의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음
- ※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을 8월 중 안내한 후, 최종합격자는 2020년 12월 말 ~ 2021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임

## Ⅶ. 전형료

1단계 전형료	2단계 전형료	3단계 전형료
20,000원	30,000원	30,000원

- 1. 원서 접수 시 전형료는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결제
- 2. 2단계 및 3단계 전형 대상자는 각 단계별 전형료를 납부해야 하며, 납부 방법은 추후 공지함
- 3.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 및 단계별 전형료는 별도 부담
- 4. 사회통합전형 지원자의 전형료는 면제(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인부담)
- 5. 원서 접수 후 전형료는 환불하지 않음

## Ⅷ. 유의사항

- 1. 각 단계별 전형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됨
- 2. 입학전형 평가 과정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
- 3. 제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4. 3단계 합격자 발표 이후 등록 포기로 인한 결원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함
- 5. 기타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함
- 6. 의·치·약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. 의·치·약학계열 대학에 응시할 경우 진학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없고, 본교가 정하는 교육지원비를 전액 반환해야 함
- 7. 2022년 3월부터 사감정수 조정으로 인해 주말 귀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

###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

중학교 재학생, 졸업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영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2조 ②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

- 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
- 2) 「도서・벽지 교육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도서・벽지에 거주하는 자
  - 가)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  - 나)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3)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
- 4) 행정구역상 읍·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
  - 가)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, 재학 기간 중 부모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
  - 나)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년간 해당 지역 소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
- 5) 그 밖의 사회·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적 이유
  - (1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제2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2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3)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1조, 제12조, 제13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4)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5)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0조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
  - (6)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의한 보호대상자
  - (7)「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
  - (8) 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
  - 나) 경제적 이유
    - (1)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(아동교육비) 수급권자
    - (2) 차상위 저소득층 : 법정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사무소로부터 지정되어 각종 차상위 관련업의 지원(차상위 의료급여 2종, 차상위 자활급여, 차상위 장애수당 등)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 득 50%이하)

# 사회통합전형 증빙 서류

구 분	제출 서류	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 ①항 4호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	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수급자 증명서 1부	
「도서・벽지 교육진흥법」제2조에 따른 도서・벽지에 거주하는 자	•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 ※ 별첨 1의 2)-나)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	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	•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서(선정통지서 등) 1부	
행정구역상 읍・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	• 주민등록등본 : 과거의 주소변동(이력)사항 포함 1부 ※ 별첨 1의 4)-나)에 해당하는 경우 초본 1부 추가 제출	
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	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	
법정 차상위 계층	• 주민등록등본 1부,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	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	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	
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<ul>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<li>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</li></ul>	
「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	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교육지원 대상자		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호대상자	• 주민등록등본 1부 • 통일부장관 발급 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	
「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	<ul> <li>주민등록등본 1부</li> <li>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(결혼이민자의 경우) 1부</li> <li>부 또는 모의 귀화증명서(귀화허가를 받은 경우) 1부</li> </ul>	
소년·소녀 가장, 조손가정의 자녀	<ul><li>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 1부</li><li>사실관계확인서 1부 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)</li></ul>	

#### ※ 제출서류 유의사항

- 주민등록등본 : 등본 상에 부, 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은 경우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(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세대분리 여부 등 확인)
- 차상위계층확인서 :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된 경우 (차상위장애수당, 차상위자활급여 등)
  - 차상위 의료급여 2종의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함